

입법의회 본회의에서 국가환경의 질 향상 및 보존 법안이 찬성 168 표로 가결됐고  
법령으로 공포됐다.

입력 2018.02.13



2018년 1월 19일에 입법의회 본회의에서 국가환경의 질 향상 및 보존 법안이 찬성 168 표로  
가결되었고 법령으로 공포되었다. 이 법안의 목적은 환경의 질 및 국민의 건강 영향평가를 통일하고  
국가개발과 동시에 국가환경의 질을 향상하고 보존하라고 권장한다.

입법의회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는 엄연히 국회를 통과한 국가환경의 질 향상 및 보존 법안을 찬성  
168 표, 반대 무표, 기권 3 표로 법령으로 공포하라고 결정한다.

입법의회 특별위원회위원장 해군 제독 왈롭 끄은폰 (ADM Wallop Kerdphol) 의원은 “위원회가 그  
법안을 심사한 후 그 법안의 몇 조 몇 항을 이리이러하게 개정한다. 예를 들자면 허가증 신청자나  
운영자가 환경영향평가서에 명시되어 있는 허가증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수행하지 않거나 회피하려고  
하는 경우 천연자원 및 환경정책·계획국 (Office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al Policy  
and Planning : ONEP) 은 벌칙을 받게 되거나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시해하도록 관계 담당관에  
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그리고 나서 그 관계 담당관이 천연자원 및 환경정책·계획국에 90 일 이내  
결과를 보고하면 된다.” 고 설명했다.

왈롭 제독은 “만약 허가증 신청자나 운영자가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운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 
1 백만 바트 초과하지 않은 벌금에 처한다.”고 덧붙여 말하다.

이 개정 법안이 1992년 국가환경의 질 향상 및 보존 법령을 개선하며 개정취지는 국가환경의 추세  
변화됨에 따라 잘 어울릴 뿐만 아니라 태국 새 헌법이 정한 “필요한 만큼의 법제정”이라는 개념에 따라  
개정하는 것이다. 이는 국가의 모든 행위나 정부는 누구든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허락하는 경우  
만약 그 조치는 천연자원, 환경의 질, 국민의 건강, 국민의 이해관계에 심하게 영향을 준다면 그 조치를  
수행하기 전에 우선 환경의 질과 국민의 건강에 영향평가를 하여야 하는 법이다.

태국 하원의원 사무처 국회 방송국

아루니 탄쌩다 기자/편집

태국 하원사무처 외국어 지원사무국 일본어·한국어과

니싸폰 쏏티만 /번역